보완대체요법의 의학적 평가

이 윤 성*

Ⅰ.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의 정의
Ⅱ. 한의학(한방)
1. 韓醫學
2. 한의학의 기원
3. 한의학의 인체관과 질병관
4. 한의학 교육
5. 한의학의 위치
Ⅲ 보완대체요법이 필요한 이유
Ⅳ 의사들의 태도
Ⅴ.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
1. 치료 효과
2. 안전성
3. 비용
4. 치료 지연
Ⅵ.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
Ⅶ. 맺는 말
Ⅷ.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1. 대체의료제도 (Alternative Medical Systems)
2. 심신중재 (Mind-Body Interventions)
3. 생물학적 치료 (Biologically Based Therapy)
4. 도수-육체 치료 (Manipulative and Body-Based Methods)
5. 에너지 요법
Ⅸ. 기타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보완대체요법
1. 원적외선 공진요법
2. 경락치료법
3. 부항치료법
4. 뜸 치료법
5. 안마 치료법
6. 단전호흡법
7. 명상법
8.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동작치료, 음악 치료
9. 목욕치료
10. 수지침 치료법
11. 발반사 건강치료법
12. 밸런스테이핑 치료법
13. 향기요법
14. 식이 치료법

Ⅰ.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의 정의

우리 사회에 보완대체요법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지는 그다지 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래 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 보완대체요법라고 부르는 치료법에 속하는 치료 행위는 '전통요법', '민간요법', '한방' 등의 이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대체요법(alternative medicine)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주류 정통의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대체요법사무소(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1998년에 국립보건원에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이란 미국에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보완대체요법은 정통의료(conventional medicine)[1]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보건의료제도(medical and health systems), 보건의료 시술(practices), 보건의료 제조물(products) 일체를 말한다. 일부 보완대체요법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치료법이 안전한지 또는 대상 질병이나 병적 상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 제대로 마련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CAM에서 medicine은 '의학', '의료', '치료', '요법' 등으로 번역하고, 사전적인 의미로 ①의학, ②의료, 의술, ③치료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정의를 살피건대 아직 이들 보건의료 제도, 시술, 제조물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의학'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의료'라는 의미를 살피면 우리의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에 종사한다고 하였는데[2], CAM은

---

1) 정통의료(conventional medicine)도 우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서양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의료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와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임상심리사 등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의학과 한의학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용어로는 allopathy, Western, mainstream, orthodox, regular medicine 또는 biomedicine이 있다.

2) 의료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들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는 요법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요법이 많으므로 역시 '의료'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하다. 다만 실제로 질병의 치료나 건강 증진에 쓰이는 방법이므로 '치료법' 즉 '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보완(complementary)은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완요법은 정통의료와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향기요법[3](aromatherapy)을 사용한다면, 이는 보완요법이다.

대체요법(alternative medicine)은 정통의료를 대신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암 치료로써 정통의료에서 추천하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대신하여 특별한 식이요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대체요법이다.

한편 통합의료(integrative medicine)란, 안전과 효과에 대한 상당히 높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통의료와 보완대체요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한의학(한방)

1. 韓醫學

우리나라에서 정통의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韓醫學)은 전통적으로 漢醫學이었다. 漢醫學은 중국과 타이완에서는 중의학(中醫學)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東洋醫學 또는 漢方(カンポウ)으로 부른다. 영어로 중의학은 Chinese Medicine이며, 우리나라의 韓醫學과 일본의 동양의학(한방)은 Oriental Medicine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전신인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제221호)에서 의료업자를 漢醫師(제2종)를 의사(제1종)와 구별하여 의료제도를 이원화하였고 지금에 이른다. 한편 1986년 5월 10일 법률제3825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漢醫學, 漢醫師, 漢醫院은 韓醫學, 韓醫師, 韓醫院으로 개칭하였다.

---

3) 향기요법은 꽃, 약초, 나무 등에서 추출한 정유(精油)로써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치료법이다.

2. 한의학의 기원

한의학은 중국의 漢方에서 비롯한다. 일찍이 전설적인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순(堯舜)에서 시작한 중국의 한의학은 송(宋)에 이르러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금(金)과 원(元) 시기에는 전쟁이 많았고 전염병이 크게 돌아 한의학이 크게 발전한다. 이 시대에는 주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고, 유명한 의사로 劉河間,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등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가 출현한다. 명(明)과 청(淸) 시대에는 전염병을 포함한 급성 질환에 대한 온병학(溫病學)이 발전한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4]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이 성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의학은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동의(東醫)는 우리 의학이 중국의학과 다름을 의미한다.

조선 말기에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체질에 따른 병리를 설명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사상체질(四象體質) 의학론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우리 의학은 중의학과 다른 면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중의학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고유의 의학을 발전시킨 것을 한의학(韓醫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요컨대 韓醫學은 중국에서 기원한 漢醫學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의학을 접목하여 '민족의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민족의학'이라는 주장은 우리 민족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학 또는 의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한의학의 인체관과 질병관

한의학적으로 인체를 작은 우주〈小宇宙〉라고 한다. 이는 인체가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우주이며, 대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

4)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이나 약재를 다른 나라의 것과 구별하여 이른 것이다.

방법으로 인체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평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초라고 한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이상적인 의사는 모든 우주적 형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현인(賢人)이며, 환자를 개별적으로 치료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총체적 상태와 자연이나 사회 환경과 관계를 살펴야 한다.

인체의 각 구성 성분은 모두 서로 관련이 있고 서로 의존적이라고 본다. 이를 넓히면 개체는 환경과 계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큰 조직체에 통합되는 한 부분이며,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한 환경에 적응하여 이것을 수정해 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은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음류(陰類)와 양류(陽類)로 나누고, 모든 사물은 그 내부에 음과 양의 양면을 공유하며, 음과 양은 상호 의존(依存)과 상호 소장(消長)과 상호 전화(轉化)의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양학설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결합시켜서 치병(治兵)의 근본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음양학설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내용은 (1)상호대립, (2)상호의존, (3)상호소장, (4)상호전화이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목(木)·화(火)·토(土)·수(水)·금(金)의 다섯 가지 물질의 운동과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행학설(五行學說)은 오행의 상생(相生)·상극(相克)·상승(上乘)·상모(相侮)·오행귀류(五行歸類)가 포괄된다.

4. 한의학 교육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생긴 한의학 교육기관은 1946년 한의사들의 모임이었던 의생협회에서 만들었던 한의학 강습소인 「동양의학전문학교」이었다. 동양의학전문학교는 2년 뒤에 「동양대학관」이라는 명칭의 4년제 을종대학(乙種大學)이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문을 닫았던 동양대학관 대신 한의학 교육을 전담한 곳은 「서울한의과대학」이었다.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원제 의료체제가

인정되자 한의사들은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 서울한의과대학을 세웠다. 서울이 수복되자 한의사들은 서울한의과대학을 「동양의약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 안암동으로 옮겼고, 얼마 뒤 다시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하였다.

동양의과대학은 한의사회가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국가에서 제시한 대학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폐쇄 조치를 당할 위기를 맞았다. 이때 경희대학교가 나서서 1965년에 동양의학대학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있다.

5. 한의학의 위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의학으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민간요법과 독창적인 이론을 추가하여, 독특한 보건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른바 '서양의학'에 비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평과 국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서 실질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외국에서는 보완대체요법으로 평가받는다.

Ⅲ 보완대체요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민간요법까지를 포함한다면, 실제로 우리 국민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횟수는 무척 많으리라 추정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의학이나 한약에 관한 자료이다. 한의학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한약취급업소의 수를 보건복지부의 자료[5]에 따르면 다음 표1과 같다.

---

5) http://www.mohw.go.kr ①시도별 의료기관, 병상 수 (2003. 6. 30.), ②전국한약취급업소 현황 (2003. 12. 31. 현재)

〈표 1〉 의료기관, 한약취급업소와 병상 수

	종 별	의 료 기 관	병 상
일반병의원*	종합병원	280	102,865
	병 원	693	76,567
	의 원	23,553	85,792
	계	24,526	265,224
한방병의원	한방병원	148	8,735
	한 의 원	8,544	692
	계	8,692	9,427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업소		9,873	

* :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부속병의원, 요양병원 제외

한방병의원의 병상 수는 일반 병의원에 비하여 1 : 28.1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의 수는 1 : 2.8에 이른다. 이는 주로 한방요법이 입원보다는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시술되는 점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이 한의학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업소는 일반병의원에 비하여 1 : 1.3에 이른다.

일반 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을 비교하기에는 의료기관의 규모나 진료하는 양태가 다르므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방병의원은 규모가 작고 진료 시간이 길며, 일반병의원은 규모가 크고 진료 시간이 짧으므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는 일반병의원에서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점차로 보완대체요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1977년에 전체 인구의 42%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차진료의사를 찾은 횟수보다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를 찾은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6].

특히 암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비율은 13 나라의 26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 7% 내지 64%(평균 31%)에 이른다고 하였는데[7].

---

6) Eisenberg DM *et al.* Trends in alternative medical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J Am Med Asso. 280:1569-75. 1998

7) Ernst E, Cassileth BR. The prevalence of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Cancer. 83(4):777-82. 1999

미국에서는 평균 63%로 높다[8].

암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찾은 목적은 ①심리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②건강을 되찾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며, ③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덜 독한 치료법을 찾으며, ④암 치료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체요법보다는 보완요법을 찾는다.

Ⅳ 의사들의 태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체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국민과 환자들이 이를 찾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전립샘 암을 가진 자신의 환자 가운데 보완대체요법을 찾고 있는 환자가 4%라고 생각한 반면에 실제로 37%가 보완대체요법을 찾았다. 한편 자신이 치료하는 암 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찾으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들은 이를 허용하는 이유로 ①환자가 원하므로, ②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③다양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④보완대체요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⑤일부에에서는 정통의료가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등을 들었다. 그러나 역시 암을 치료하기보다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인정할 뿐이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①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②불필요한데다가 비용이 많이 들고, ③헛된 희망을 갖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④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Ⅴ.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

보완대체요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

8) Sparber et al. Use of complementary medicine by adult patients participating in cancer clinical trial. Oncol Nurs Forum. 27(4):623-30. 2000

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보완대체요법은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2)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3)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1. 치료 효과

보완대체요법의 대부분은 아직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보완대체요법의 개념이 통계나 수식으로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기존의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들은 대부분 효과를 보이는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다만 그 효과가 있다는 결과 또는 효과가 있던 사례만을 제시한다. 그 결과로 보완대체요법의 단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시술자나 환자도 그 치료법을 사용하여 나타난 효과인지 아니면 위약(僞藥)효과(placebo effect)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위약효과는 실제 효능이 없는 가짜 약으로도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통증, 메스꺼움, 배고픔, 피로, 어지럼증,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들에 효력이 있다. 즉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람은 그 치료의 효과를 맹신하여 실제로 질병이 호전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근거바탕의료, evidence based medicine)라면, 예컨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Level A : 질 높은 무작위 대조 시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의 결과가 여럿 있다.

Level B : 질 높은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하나 있고, 질이 높지는 않으나 무작위 대조 시험이 여럿 있다.

Level C : 한 번 이상의 무작위 대조 시험이 있다.

Level D : 무작위 대조 시험이 없다 (근거 없음 : no evidence).

그런데 많은 보완대체요법이 내세우는 근거란 ①치료 효과의 경험이 있음만을 주장한다. 즉 "이 방법으로 치료하여 나은 사람이 있거나, 많다", ②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나 성분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청정 수역

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경락을 자극하여…", ③ 보조제이거나 특수 성분의 효과를 과장한다, 즉 "칼슘이 많으므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엉터리 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기적, 치료, 획기적 성공, 비법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완치,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 성분을 제시하지 않는다.
- 추천한 전문가의 이름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
-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즉 여러 질병이나 병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 모두 천연성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자료의 근거를 밝히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언급한다.

2. 안전성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은 각 요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의료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므로, 의학에서 모든 치료방법에는 부작용을 고려한다. 법에서도 의료는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자연 재료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재료가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버섯은 자연적인 생산품이고 먹을 수 있지만 독버섯도 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치료법에도 달리 반응하기도 한다. 보완대체요법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 치료법의 적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반응할 것인데, 이를 간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은 특별한 허가 없이 판매되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술한다. 그러나 안전성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약제의 구성 성분, 성분의 재료, 제조과정 등은 안전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식이요법(비타민 등 포함)에 쓰

이는 재료는 대개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만, 의약품처럼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보완대체요법 가운데에는 훈련을 받고 자격(또는 면허)을 가진 사람이 시술해야 하는 치료법이 있다. 심지어 일부는 의료인이 시술해야 할 것도 있다[9]. 또는 의료인은 아닐지라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마사처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술해야 하는 내용도 있고[10], 일반인이 시술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내용[11], 그리고 아무라도 훈련을 받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12]등으로 안정성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완대체요법을 시술 받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1) 보완대체요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의료인과 상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치료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식물이나 약초는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성 간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녹즙 등을 마시는데, 오히려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2)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 의사와 보완대체요법 시술자에게 각각 알려서 위험을 줄여야 한다.

(3)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이든 보완대체요법이든 시술 받으려는 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단순히 남의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4) 시술자가 시행하는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였다면, 시술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9) 일반적으로 한방의료는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 의사라도 면허 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증식요법(prolotherapy)은 인대와 힘줄에 증식치료제를 주사로 주입하는 치료법이므로, 의료인이 시술한다. 한편 카이로프락틱, 척추교정술, 벌침요법 등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10)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chiropractor가 카이로프락틱을 시술할 수 있다.

11) 수지침, 테이핑요법 등은 일반인이 시술한다.

12) 민간요법은 여기에 해당한다.

3. 비용

일부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방의료와 보완대체요법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 요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나, 어떤 요법 특히 비법(秘法)으로 알려진 치료법이나 약제는 엄청나게 비싸다. 더욱이 이들 비법은 원가보다도 심리적인 목적이나 또는 의도적으로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 이른바 유명하다는 보완대체요법 시술자일수록 더 비싼 경향이 있다.

4. 치료 지연

보완대체요법을 부정하는 의사들은 이 요법 때문에 환자의 질병을 제때에 진단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거나 또는 늦추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완요법보다는 대체요법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Ⅵ.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13]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4]에 따라 처벌한다.

---

13)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권 해석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료행위를 병의 예방과 치료에 국한된 행위로 보았다 (대법원 71다2731)[15].

그러나 그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생명, 신체,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전합 74도1114)[16]. 따라서 코 높이기 수술뿐 아니라 종래에 미용성형으로 분류되던 곰보수술, 쌍꺼풀 수술도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사 아닌 자가 이를 행할 시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 외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척추교정술(대법원 84도2888[17], 86도2270[18]), 침을 놓은 행위(대법원 85도933[19]). 성기확대술(대

15) "곰보수술, 쌍눈겹풀, 콧날세우기 등의 수술은 이른바 미용성형수술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미용성형수술은 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

16) "...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를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성형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 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7)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8)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 가위 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19)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86도2270). 피부관리실에서의 피부박피술(대법원 93도2544[20]), 색소침윤술에 의한 미용문신(대법원 90노2672[21]), 한약업사의 진단과 한약조제행위(대법원 93도153[22]), 조산사가 질염치료나 인공임신중절 및 그 수술 후의 처치를 하는 행위(대법원 92도848),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대법원 87도 840[23]), 약사가 환자의 병세를 묻고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대법원 80도1157). 그에 반하여 안수기도와 같은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91도3340[24]).

Ⅶ. 맺는 말

(1) 정통의료로 건강과 질병 치료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보완대

---

20)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1)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행위는 그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

22)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3)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소목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 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 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 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 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

24)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

체요법은 필요하다.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나 범위는 끊임없이 변한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정통의료에 포함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의학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3)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혹하거나 일부 사례만으로 효과를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효과에 대한 기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자격과 면허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5) 일반 국민은 근거 없는 보완대체요법에 현혹되지 말고, 요법과 식품-약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신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Ⅷ.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미국 보완대체요법센터가 정리한 방법에 따르면 5가지로 구별한다.

1. 대체의료제도 (Alternative Medical Systems)

대체의료제도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이론과 시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정통의료가 생기기 전부터 시행된 것도 많다. 예를 들어 서양문화에서는 동종요법[25]이나 자연요법[26]이 있고, 동양에서는 한방(Chinese medicine)과 아유르베다(Ayurveda)[27]가 대표적이다.

---

25) 동종요법(同種療法 hemeopathy)은 "like cure like"의 믿음에 따라, 정상인에서 비슷한 증세를 보일 수 있는 약을 적은 양만 사용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비되는 용어로는 대증요법(對症療法, allopathy)이 있다.

26) 자연요법(自然療法 naturopathic medicine)은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부추겨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수술이나 제조한 약은 사용하지 않고 식사요법이나 약초, 비타민, 맛사지, 침 등을 사용한다.

27) 아유르베다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5,000년 전부터 사용된 치료법이다. 주로 식사와 약초를 사용하며 질병 치료에 몸과 마음과 정신의 작용을 강조한다.

2. 심신중재 (Mind-Body Interventions)

심신의료는 다양한 기술로 마음의 능력을 촉진하여 몸의 기능이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몇 가지 기술은 보완대체의료로 취급되었다가 지금은 주류 의료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환자를 돌보는 그룹이나 인지-행동요법 등이 있다. 그 외의 명상, 기도, 정신치유-치료 등의 심신중재 기술은 비록 미술이나 음악이나 무용에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완대체의료에 속한다.

3. 생물학적 치료 (Biologically Based Therapy)

생물학적 치료에서는 약초, 음식, 비타민과 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건강보조식품[28], 약초 제조물과 같은 자연물질, 예컨대 상어 연골로 암을 치료하는 것 등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4. 도수-육체 치료 (Manipulative and Body-Based Methods)

손으로 만지거나 누름으로써 또는 몸의 일부를 움직임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다. 카이로프락틱[29]과 정골요법[30], 맛사지 등이 이에 속한다.

---

28)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은 식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음식에 포함된 성분을 포함하며 마시거나 먹도록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아미노산, 효소, 장기 조직, 대사물 등이 포함된다. 제제로는 추출물(extract), 농축액(concentrates), 정제(錠劑, tablet), 캡슐, 연질캡슐, 액체, 가루(粉) 등이 있으며,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한다.

29) 카이로프락틱(chiropractic)은 기본적으로 몸의 구조, 특히 척주와 몸의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척주의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으로 누르거나 움직임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한다.

30) 정골요법(整骨療法, osteopathic medicine)은 미국에서 19세기 창안된 요법으로 현재 정골요법의학교(school of osteopathic medicine)가 19개 있다. 미국에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치료 체계로 거의 모든 질병은 근육골격계통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몸의 여러 계통은 함께 작용하는 것이므로 한 계통의 기능장애는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치료 방법으로는 통증을 완화하거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수되는 정골요법 도수치료를 사용한다.

5. 에너지 요법

에너지 장(energy fields)을 이용한 치료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1)생물장요법(biofield therapy); 몸을 둘러싸고 몸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장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손으로 이 장에 놓거나 통과하면서, 몸을 만지거나 압박함으로써 에너지 장을 조절한다. 예로는 기공[31](氣功), 영기[32](靈氣), 기치료[33](氣治療)등이 있다.

(2) 생물전자기요법(bioelelctromagnetic-based therapy) : 약동장(pulsed fields), 자기장(magnetic fields), 교류전기장(alternating-current fields), 직류전기장(direct-current fields)와 같은 전자기장(電磁氣場)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Ⅸ. 기타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보완대체요법[34]

1. 원적외선 공진요법

- 정의 :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인체 구성 성분인 원자를 분당 2,000번 이상의 진동으로 흔들어 세포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생명활동을 북돋는다.
- 개발자 : 러시아 Dr. Rusdam Rakhimov
- 효과 : 피부 미용, 관절염, 신경통, 피부염,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

---

31) 기공(氣功, qi gong)은 전통적인 한방(漢方)요법의 한 형태로 움직임, 명상, 호흡조절 등으로 몸에 있는 기(氣, 생명에너지)의 흐름을 촉진하여,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이다.

32) 영기(靈氣, reiki)는 일본에서 일컫는 이른바 우주의 생명력이다. 영기시술자를 통하여 영기(생명력)가 환자의 영기를 치유하고 결국 몸의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33) 기치료(氣治療, therapeutic touch)는 손을 얹는 고대의 기술에서 기원하였다. 몸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치유할 수 있는데, 기치료사는 에너지의 불균형을 진단하고 자신의 치유력을 손을 얹음으로써 환자에게 전달하여 회복을 돕는다.

34) 대체보완치료연구회. 대체 · 보완치료. 현문사. 2001.

2. 경락치료법

- 정의 : 경맥(經脈)과 낙맥(絡脈) 그리고 361곳의 경혈(經穴)을 자극하여 기혈(氣血)의 정체(停滯)를 풀어주고 부조화를 조정한다.
- 개발 : 서기전 200년 경에 쓰인 〈황제내경〉
- 효과 : 거의 모든 질환, 건강 회복

3. 부항치료법

- 정의 : 경혈(經穴)이 있는 피부에 음압(音壓)을 작용하여 비생리적인 체액인 담음(痰飮)과 어혈(瘀血)을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 개발 : 고대 동서양
- 방법 : 단관법, 다관법, 섬관법, 유관법, 주관법
- 효과 : 주로 외상 치료, 폐결핵, 고혈압, 당뇨병 등의 내과적 질환

4. 뜸 치료법

- 정의 : 쑥이나 다른 물질을 경혈(經穴) 위에 놓고 태워 온열과 화학적 자극을 피부에 투입하여, 기혈을 온통(溫通)한다.
- 개발 : 〈황제내경〉 등
- 방법 : 직접뜸(반흔뜸, 무반흔뜸), 간접뜸(소금, 마늘, 생강, 부자, 후추, 뜸대)
- 효과 :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기능을 강화한다.

5. 안마 치료법

- 정의 : 체표면을 밀고 당기고, 비비고, 두드리고, 눌러서 신체 기능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질병을 치료한다.
- 개발 : 고대 중국, 고대 힌두, 페르시아, 이집트
- 효과 : 통증 완화,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6. 단전호흡법

- 정의 : 생명활동의 기본 에너지인 단(丹)이 모이는 자리인 전(田)을 단전이라 한다. 이 가운데 하단전인 배꼽 부분을 생각하고(思), 말하고(言), 움직이는(行) 데에 필요한 모든 기운의 중심으로 보고, 호흡으로써 하단전을 통하여 생명활동을 살린다.
- 개발 : 우리 고대의 호흡법
- 효과 :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7. 명상법

- 정의 : 호흡 조절과 명상을 통한 건강 유지, 건강 증진, 질병 치료
- 개발 : 종교 명상; 요가, 참선(參禪)
- 효과 : 건강 유지와 증진, 불안, 정신 치료

8.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동작 치료, 음악 치료

- 미술치료 : 1950년 Kramer이 개발한 방법으로 미술 활동으로 심리상태를 진단·평가하고, 심리치료나 작업치료로도 활용한다.
- 무용/동작 치료 : 1960년대 미국 무용치료협회에서 시작하였다. 동작을 통하여 개인의 감정과 정신과 신체를 통합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개발하며, 심리치료를 한다.
- 음악 치료 : 2차대전 이후 발전한 방법으로 부적응 상태를 개선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9. 목욕치료

- 정의 : 물을 이용하여 증상 완화, 건강 증진, 질병 치료를 시도한다.
- 개발 : 고대
- 방법 : (1) 목욕 방법 – 전신욕, 반신욕, 좌욕, 각탕법, 족탕법, 물맞이욕, 한증요법

  (2) 목욕 재료 – 해수, 솔잎, 약쑥, 국화·쑥, 버드나무껍질, 생강과 향나무, 고추가루·겨자가루, 소금, 숯, 청주, 식초, 녹차, 마늘, 박하, 삼백

초, 자소엽, 익모초, 장미, 황토, 영지, 알로에, 미역 · 다시마, 레몬

- 효과 :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위산과다, 요통, 초기 감기, 해열, 견비통, 부종, 관절염, 피부염 등

10. 수지침 치료법

- 정의 : 손 안에 있는 인체 부위, 즉 상응 부위와 치료혈로 정해진 245개의 정혈과 장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14기맥을 자극하여 인체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치료 · 회복을 도모한다.
- 개발 : 1971-75 유태우
- 효과 : 거의 모든 질환의 진단과 치료

11. 발반사 건강치료법

- 정의 : 각 기관의 말단 수신기인 발을 자극함으로써 각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 하며, 피를 맑게 하며, 면역력을 증강한다.
- 개발 : 황제내경, 화타비지
- 효과 : 혈액순환 원활, 에너지 순환, 각 계통의 조화, 내분비 균형, 스트레스 해소

12. 밸런스테이핑 치료법

- 정의 : 테이프를 피부에 붙여, 피부에 흐르는 전기적인 흐름을 조절한다.
- 개발 : 1920년경 유럽의 osteopathy, 1994년 일본 정형외과 의사 아리가와
- 효과 : 거의 모든 질환, 특히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13. 향기요법

- 정의 : 식물의 잎, 꽃, 줄기, 껍질,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정유(essence oil)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대상과 체질에 따른 사용한다.
- 효과 : (1) 방부 효과와 항균 효과, (2) 진통 효과, (3) 항진균 효과, (4) 진정 효과

14. 식이 치료법

• 정의 : 건강보조식품을 통한 질병 예방, 치료,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건강보조식품 종류	적 용
정제어유	EPA :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원활 DHA : 두뇌 영양 공급
로얄제리 가공식품	영양 보급, 건강 증진-유지, 고단백 식품
효모 식품	영양 불균형 개선, 영양 공급, 건강 증진-유지, 신진대사
화분 가공식품	영양 보급, 피부 건강, 건강 증진-유지, 신진대사
스쿠알렌 식품	산소 공급 원활, 피부 건강, 신진대사
효소 식품	신진대사, 건강 증진-유지, 연동작용, 체질 개선
유산균 식품	장내 유해 미생물 억제, 장내 연동작용, 정장 작용
조류 식품	스피루리나 : 필수 아미노산 공급, 단백질 공급, 영양 공급 클로렐라 : 단백질 공급, 영양 보급, 핵산-엽록소 함유, 건강 증진
감마리놀렌산 식품	필수 지방산 공급, 콜레스테롤 개선, 생리활성물질 함유
소맥배아 가공식품	항산화 작용, 과산화지질 생성 억제, 생리활성성분 함유, 신진대사
옥타코사놀 식품	건강 증진-유지, 지구력 증진
대두레시틴 식품	콜레스테롤 개선, 두뇌 영양 공급, 항산화 작용, 혈행 개선
알콕시글리세롤	유아 성장, 생리활성 성분, 신체 저항력 증진
포도씨유 식품	항산화 작용, 필수 지방산 공급
식물추출물발효식품	건강 증진-유지, 체질 개선, 영양공급
단백식품류	건강 증진-유지, 체내 물질 운반, 단백질 대사 균형, 허약체질 개선
엽록소함유식품	SOD함유,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건강 증진-유지
버섯가공식품	혈행 원활, 생리활성 물질 함유, 건강 증진-유지
알로에 식품	장 운동 원활, 면역력 증강, 피부 건강, 쾌변
매실추출물 식품	유해균 번식 억제, 피로 회복, 유기산 작용
칼슘 함유 식품	칼슘 부족 예방, 성장 발육
자라 가공 식품	건강 증진-유지, 영양 보급, 단백질 공급, 신체기능 활성, 체력 증진
키토산가공 식품	콜레스테롤 개선, 항균 작용, 면역력 증강, 생리활성 물질
프로폴리스 식품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
베타카로틴 식품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